



실적 부진에 따른 매출 증대 독촉 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 주제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 급 : 서울행정법원
 선고 일자 : 2010. 2. 23.
 당 사 자 :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 경조사 참석 등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고,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 등

(가) 원고는 1990. 3. 19.경 00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9년 정도 제약회사의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 1. 1.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

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상사인 정○○ 상무의 지시에 따라 매월 팀장 회의의 안건정리, 관리 업무, 다른 영업팀의 매출목표 정리 및 관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규정상 원고는 주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본연의 영업업무와 함께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의 영업업무 특성 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12회, 같은 해 10월 16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8년 9월 2회, 같은 해 10월 2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8. 10. 3.(금) 및 4.(토) 경주에서 열린 내분비 패널토의를 준비하느라 2008. 9. 2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2008. 10. 31.(금) 및 같은 해 11. 1.(토) 서울에서 열린 대한 당뇨병 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8. 11. 8.(토) 및 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 같은 달 15.(토) 서울에서 개최된 당뇨견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휴일근무를 하였다. 그 이외에 원고

는 2008. 10. 24.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2분기에는 6위, 3분기에는 5위, 4분기에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11. 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9.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 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1962. 7. 7.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으로 2004. 9. 21. 경 이후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과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내과의원, 분당○○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평소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소외 노○○은 2003. 10. 21. 워크숍에 참가하였다가 두통 및 구토 증세를 일으켜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소외 김○○은 2006. 4. 3. 소외 회사에 흡수 합병된 주식회사 00의 영업담당 전무로서 근무하다가 2004. 2. 4.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분당○○병원)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 장애와 우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상태에 있었음.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커다란 뇌실질내 출혈이 있었고, 양측 측뇌실, 제3뇌실과 제4뇌실에도 출혈이 파급되어 있었으며, 이학적 검사 결과, 고혈압이 있었고, 임상병리 검사 결과, 고혈당증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내원 후 곧바로 정위 뇌수술 방법으로 뇌실질내 혈종 내에 혈종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우측 측뇌실에도 뇌실출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그 외에 고혈압, 고혈당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

- 고혈압, 당뇨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고,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더욱 촉발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고혈압, 당뇨가 평상시보다 잘 관리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뇌출혈의 가능성을 크게 함.

(나) ○○대학교병원

- 상기 환자는 2006. 8.부터 본원 내분비 대사 센터에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음. 혈당, 혈압 조절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었으나, 비만 관리는 계획하였던 대로 감량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 2008. 11.에 뇌출혈 발생하여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료를 하였음. 비교적 젊은 나이와 짧은 유병기간에 뇌혈관 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이유는 불규칙적인 생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 2008. 11. 17. 손에 마비 증상이 있어 분

당○○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음. 과거 수진내역 상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촬영한 CT 상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질출혈 등의 소견이 인지됨.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과거 당뇨,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범원의 주식회사 ○○○○, 분당○○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6세가 넘는 남성으로서 2006. 1. 1.부터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는 2008년 9월 12회, 같은 해 10월 16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2008년 9월 2회, 같은 해 10월 2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 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08. 10. 3.(금) 및 4.(토) 경주에서 열린 내분비 패널 토의를 준비하고, 2008. 10. 31.(금) 및 같은 해 11. 1.(토) 서울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1. 8.(토) 및 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 같은 달 15.(토) 서울 ○○대학교에서 개최된 당뇨 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그 이외에 2008. 10. 24.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까지 담당하느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강

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2분기에는 6위, 3분기에는 5위, 4분기에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11. 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9. 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한 직후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 9. 21.경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⑤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노○○이 업무상 과로로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 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